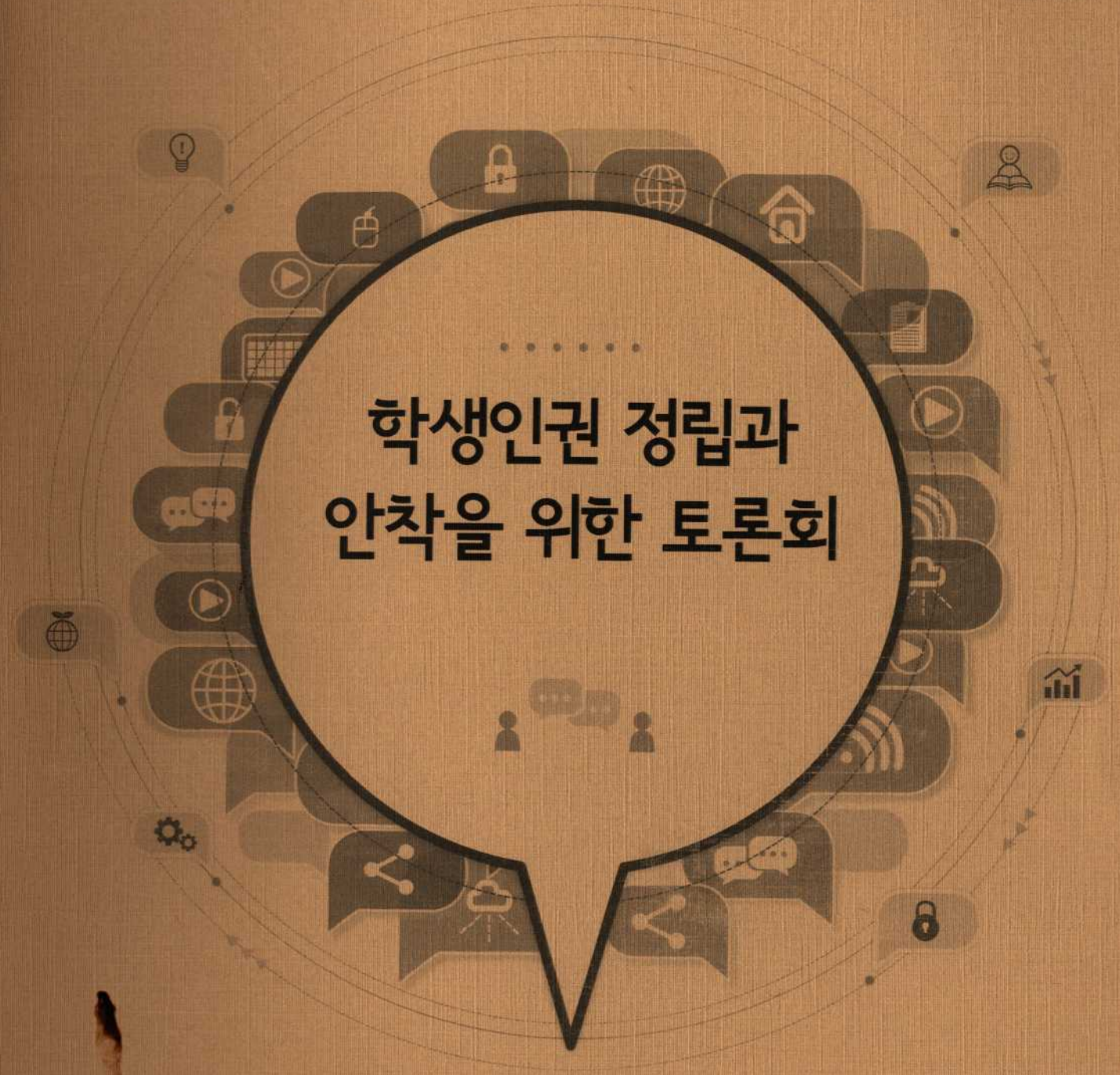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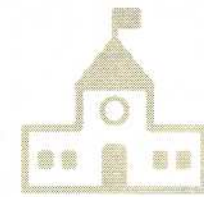
www.goe.go.kr



.....
**학생인권 정립과
안착을 위한 토론회**

.....

학생인권 정립과 안착을 위한 토론회



학생인권 정립과 안착을 위한 토론회 일정표

시간	구 성 내 용	
14:00~14:30	등록	
14:30~14:50	개회	진행재(김형욱, 경기도교육청 1권역 학생인권옹호관)
	인사말씀	김국회(교육국장) 이재삼(교육위원장)
14:50~15:40	발제	1.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본 학생인권의 현황 김형완(인권정책연구소 소장) 2. 학생인권보장기구의 현황과 전망 오동석(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40~15:50	휴식	
		좌장 : 김형완(인권정책연구소 소장)
15:50~16:05	토론1	정미영(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 대표)
16:05~16:15	토론2	최형규(양평 서중중학교 교장)
16:15~16:30	토론3	이보영(안성 두원공업고등학교 2학년)
16:30~16:45	토론4	김민태(경기도교육청 2권역 학생인권옹호관)
16:45~17:30	종합토론	
17:30~17:40	정리 및 폐회	

Contents

[토론]

<주제 1>

- ☞ **학생인권 무엇이 해법일까?** 1
정미영(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 대표)

<주제 2>

- ☞ **학생인권의 인착을 위하여..** 4
최형규(서종중학교 교장)

<주제 3>

- ☞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본 학생인권의 현황** 10
이보영(안성 두원공업고등학교 2학년)
- ☞ **학생인권보장기구의 현황과 전망** 12
이보영(안성 두원공업고등학교 2학년)

<주제 4>

- ☞ **경기도 학생인권옹호관의 역할과 한계** 13
김민태(경기도교육청 2권역 학생인권옹호관)

- [메모] 24

학생인권 무엇이 해법인가?

정미영(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 대표)

I 학생인권 조례 제정 후 학부모는 학생인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 첫째, 여전히 밑그림?

학생의 인권은 인간이라면 존중받고 존중해야할 기본권이어서 함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배제된 일방적 체벌이나 폭력이 학교 안과 밖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비단 어른으로서의 교사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닌 학생간의 폭력과 차별도 포함된다.

어떤 인권도 차별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성적위주와 대학진학을 목표로 삼다보니 인권을 논하는 자에 대한 배제를 하는 학교도 여전히 있다. 더 아이러니 한 것은 이에 박수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도 두발에 대한 규제, 복장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체벌이 교묘히 분장한 언어폭력의 형태로 둔갑해 있다.

이를 학부모의 입장에서 바로 볼 때 학생인권은 여전히 밑그림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 둘째, 누구의 인권이 가장 소중해?

인권은 학생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의 인권까지 포함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자치규정들을 틀에라도 묶어 두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어느 일방의 인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생에 대한 존중과 인권에 대한 배려를 해야 마땅하다. 반대로 학생은 교사 곧 선생님에 대한 인권 또한 존중해야 한다. 이를 우리 학부모는 존경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인권을 남용한 거친 사례들을 듣거나 볼 때마다 어른이며 학부모인 나로서도 한숨이 나온다.

제대로 된 인권에 대한 존중은 트라이앵글처럼 이어져 있어야 한다.

학생인권 조례 공포 후 우려했던 교권실추에 대한 생각을 아니 할 수 없다.

교사는 교권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하는 입장이 되어야 마땅하다. 교사의 교권을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통제하며 교권에 대한 타격이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학생인권 조례 도입 후 교사는 자기 정체성을 잃은 듯한 생각이 든다. 단순히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가 정답이 된 셈이다.

수동적인 인권 존중이 아닌 상호 공존하며 존중하는 인권문화가 정착하려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인권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보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II 학생인권 조례에 따른 제도적, 정책적 방향들

- 첫째, 생기부 기재에 대해

생활기록부 기재는 또 다른 압력제도로 등장했다.

학생, 학부모는 생기부 기재에 따른 불만이 많다. 이러한 제도는 어떤 형태로든 학생의 미래에 대한 상처로 작용할 것이며 인권존중을 저해하는 제도이다.

될 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누군가를 문제아로 낙인찍어 그 장래를 그 낙인의 잣대로 평가 되게 하는 것은 인권존중과 거리가 멀다. 생기부 기재를 철폐해야 한다.

- 둘째, 교원평가제도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대해

학부모가 담임정도를 정확히 알고 파악해 놓는 것도 웬만한 학교일에 참여가 없으면 어려운 이야기다. 교과과목에 대해 혹은 교사에 대해 어떤 학부모가 제대로 된 진단을 하여 성실하게 답변할 것인가? 내용도 난해하다. 오히려 이러한 저울질로 교사를 피곤하게 할 것이 아닌 교과과목과 연구에 시간을 할애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고 그 시간을 아이들에게 할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의 과중한 업무량은 곧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고 본다. 제도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 셋째, 폭력자치위원회에 대해

학교의 기구인 폭력자치위원회의 비전문적 구성원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제대로 진단하며 해결능력이 있는가? 폭력자치위원회의 전문성(교육)을 강화하고 문제 해결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 재발 방지도 힘 쓰는 기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개선이 요구된다.

- 넷째, 상벌점제에 대해

- 체벌대체제도인 그린마일리지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상점보다 교사의 일방 통보적인 벌점제에 대한 불만이 크다고 본다.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III 학생인권 옹호관제도에 대해.

학생인권 옹호관 학생인권상담 사례집을 토대로 한 내용을 보면 폭력과 차별에 대한 인권상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옹호관 제도를 이용하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상담내용 사례를 보면 의견표명, 권고의 수준이다.

제대로 된 옹호관 제도를 정착 시키고자 한다면 위클래스의 기능보다 강화된 전문기구로서 사례,헌법, 교육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국가인권위원회,유엔아동권리협약등을 연구하고 해결하는 명실상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또한, 학생들은 옹호관제도가 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본다.

- 마무리 -

학생들을 어느 틀에 가둬두려고 하지 말자.

그 틀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어른위주의 고정관념보다. 그들이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부딪치며 자기를 성찰하는 과정을 거쳐 설 수 있도록 올바른 안내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

우리는 테두리를 벗어났다하여 그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개성에 맞는 교내 동아리활동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돌파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 취향에 맞는 사회적기구의 문화활동, 봉사활동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과 자아를 찾는 프로그램에 참여 시킴으로써 억눌린 자아에 자유를 주며 자기발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따뜻한 어른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학생인권의 안착을 위하여...

최형규서종중학교 교장

I 들어가며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올해로 3년째다. 학생인권이 신장됐다는 사회적 인식은 퍼졌지만 실제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인권과 민주주의는 시행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근 교육시민단체인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가 지난 8월 전국 81개 초·중고 학생 2921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인권·생활실태 조사 결과를 보도한 기사 내용 중 일부다. 이번 조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비교해본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사회적인 인식과 학교 내의 인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결과는 발제자가 제시한 2012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분명하다. 우선 체벌이 사라지고, 생활규정이 구성원들의 협의·일정한 절차를 통해 인권친화적으로 개정되었다. 학생들의 머리 길이 때문에 발생하는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 깊숙이 들어가보면 세세한 부분에서 문제점과 구성원 간 갈등의 불씨를 여전히 안고 있다. 인권조례 초기에 비해 생활규정의 내용이 변질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학교가 퍼머나 염색을 금지하고 있어, 학생들은 단순히 머리 길이의 자유만을 얻고 말았다. 공식적인 체벌은 거의 사라졌지만,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이유로 '방임'으로 대응하거나 적절치 못한 대안을 적용함으로써 체벌 금지의 근본적 취지가 무색해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학급회의는 학생들의 기초 의사결정 기구지만 학교에서 매주 정기적인 학급회의가 열리는 경우는 20%에 불과해 학생 자치권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은 "학생회 조직과 교내 언론 등이 학교의 간섭을 받는다"고 답했다.'

II 학생인권에 접근하는 관점의 변화

관점의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당시와 비교해보면 구성원들의 관심도나 추진 동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제정 초기의 뜨거움은 많이 식어버렸고, 교육청의 의지도 눈에 보이게 줄어든 느낌이다. 이런 분위기는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여서 학생인권은 '생활인권'이라는 용어 안에 안주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약간의 여유를 주는 선에서 벌써 화석화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학생인권의 정립과 안착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다시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열기를 더하기 위해서는 '생활인권'이라는 영역의 제한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전반으로 학생인권의 초점이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인권은 생활교육에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다. 학생 인권은 교육과정 속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복장과 두발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조례에도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학생인권의 실현을 추구'되어야 한다. 즉, 학생인권은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 등 학생들의 삶 전체에서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활교육이라는 일부 영역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과정은 학교 전반의 교육활동을 아우르는 것으로 생활교육은 그 중 일부를 차지할 뿐이다. 결국 교과 수업과 창체 활동 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서 학생인권이 고민되어야 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자치의 영역으로 확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자치는 물론 교사자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학교현실이다. 학생자치는 학생회나 학생활동 일부에 자율권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이런 자유도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있다. 교사들의 자율권 또한 상황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교사, 학생 모두 학교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극히 제한된 자유만 허락되고 있다.

학생자치와 교사자치는 학교자치로 모아진다. 결국 학교가 진정 민주적이고 자치가 활성화되는 공간으로 자리하지 않고서 학교인권을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학교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은 학생인권의 차원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리고 학생인권을 둘러싼 찬반의 가치논쟁에서 벗어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화와 시스템 구축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학생인권 정착을 위해 인권옹호관 제도는 특별하다. 인권옹호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면서 소기의 역할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인권옹호관 조직으로는 경기도 전체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인권침해 상담과 조사, 구제 등 소기의 성과를 기대 하기 어렵다. 어려운 조건에서 개인적으로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는 것과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상황에서 움직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앞으로 학생인권의 정착은 개인적 열정과 의지가 아닌 조직과 문화로 풀어야 한다. 지금 교육청의 각종 교육정책들을 모니터하고 인권친화적인 정책이 생산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감이 바뀌면 그동안의 정책도 함께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 일반화'와 이를 지원하는 각종 시스템이 학생인권 부분에서도 갖추어져야 한다.

인권교육도 교사를 중심으로 교과교육과 생활교육 속에 녹아들어가야 한다. 초기에는 전반적으로 인권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인권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그런 외부 특강으로 진행되는 인권교육은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인권교육의 내용을 담아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담당할 센터의 건립과 더불어 교사와 학생이 직접 만나는 수업과 학교생활 전반에서 진정한 인권실천을 위한 노력이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교사의 변화 없이 교육과 학교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III 교사의 자존감과 소통하는 민주적 학교

아직도 많은 교사들이 학생인권조례에 반감을 갖고 있다. 반감을 갖는 배경에는 학생지도(교육)의 어려움과 더불어 학생에게만 집중된 인권논쟁에서 소외된 측면도 자리한다. 사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당시

교사가 중추적으로 인권논쟁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외부 인권활동가에 의해 전면화 되었고, 그러다보니 교사는 수동적으로 인권논쟁에 끼어들게 되었다. 심지어 교사가 피해자라는 인식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는 상황에서 조례제정 이후 교사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학교 밖 인권 활동가가 학생인권에 불을 지폈다면 이제는 학교 내 교사가 나서야 한다. 학생인권의 보장이 교사인권의 추락이 아니라 교사의 권리를 더 보장하는 길임을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인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교 구성원 모두를 포함하는 '학교인권'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성과와 경쟁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학교도 마찬가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교사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만족감이나 자존감, 성취감 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중등 교사의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77점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교사의 효능감이 조사에 응한 OECD 23개 참가국 중 꼴찌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다른 직업과 비교해 발표한 교사의 직무만족도는 전체 100위 중에 90위라고 한다. 최근에는 교사의 사회적 지위에 비해 학생들이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교사관련 지표가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학생인권의 정착은 불가능하다. 인권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의 관계는 인권의 측면에서 핵심에 해당한다. 상대방 모두나 한쪽이 자존감을 상실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의 권리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교사의 권리와 자존감의 회복이 학생인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된다. 그럼 학교에서 교사의 자존감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우선 교사의 자율성과 자발성이다. 우리나라 교육구조는 관료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상하의 위계질서가 분명하고 업무가 분화되어 있으며,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이 설 자리는 좁다. 특히 학교에서 교사의 경우 수업의 전문성과 독립성, 자율성을 요구받지만 현실은 녹녹치 않다.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교사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실행에 옮기기 쉽지가 않다. 특히 평가의 경우 극명하게 드러난다. 물론 최근 혁신의 바람이 불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유연함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명령에 복종, 자율적 영역의 부재, 지시와 통제의 학교 문화에서 교사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교사의 권리문제와 연결되며 성취감을 통한 자존감과도 연계되는 중요한 문제다. 학교는 균형의 관계가 필요하다. 교장이라고 권위만을 내세우고 교사를 통제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교사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에게 교사의 권위만을 내세워서는 배움이 있는 수업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교사에게 수업과 평가, 생활교육 등 아이들과의 관계 설정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래야 자발성이 생기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교권과 학생인권이 바로 서게 되는 것이다.

교사의 자존감과 효능감 또한 중요하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교사의 자존감은 최악의 상황이다. 교사없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사들은 효능감과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이제 교사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치유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교사가 배가 고프면 학생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다.



교사의 자존감 역시 교권의 문제이며 소통의 문제이다. 교권은 피상적으로 학생들에 의해 침해받기 쉽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문제로 교육부나 교육청, 그리고 관리자 등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교권을 보호하고 교육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교사의 자존감을 높이는 정책이 나와야 하고 학교 시스템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소통은 결과보다는 차이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산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지만 어떻게 오르는가도 매우 중요하다. 교사의 권리와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진정한 교육과 인권친화적인 학교는 기대할 수 없다.

인권친화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사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이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적 학교 체제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동등한 관계에서의 소통과 자치가 요구된다. 그러나 소통의 길은 쉽지 않다. 우선 권력의 차이가 심할 경우, 동등한 관계의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권력의 균점이 필요하며 교사에게 대폭 권력을 이양해야 한다. 관리자에 의해 독점된 권력 뿐 아니라 국가와 교육청의 권력도 현장의 교사에게 상당 부분 옮겨와야 한다. 그래야만 교사 스스로 자발성과 자율성을 토대로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소통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회 정례화, 발언권의 보장, 수업 공개 등 자치 활성화를 위한 문화의 조성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로의 생각과 입장의 차이는 있을 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를 존중하고 간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다. 이것이 소통의 본질이다. 이 때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고 차이를 차별로 왜곡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게 바로 인권친화적 학교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러한 노력은 학생과 교사, 교사와 교사, 관리자와 교사 모두에게 해당된다. 결국 인권친화적 학교와 민주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학교는 같은 뿌리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모든 인간이 통치자를 뽑을 권리가 있다라는 말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사고를 전제로 한다. 즉 민주주의와 인권은 동일한 사고 방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학교의 민주주의 역시 모든 구성원이 의사결정권을 갖고 소통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모든 구성원의 권리가 존중되고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함께한다. 보통 민주주의의 위기는 불평등에서 온다. 경제적 불평등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애인 것처럼 학교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애도 관계의 불평등이다. 교사 간 또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그리고 관리자와의 관계에서 동등한 표현과 발언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 시스템 속에서 소통은 가능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장도 이루어지게 된다. 역시 중요한 것이 의사결정의 문제다. 그래서 인권친화적인 학교 시스템의 변화를 고민할 때도 의사결정과정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IV 나가며

학생인권이 학교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릴 필요는 없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월의 흐름에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모든 일엔 단계가 있기 마련이다. 학생인권이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라면 그에 적합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학생인권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이야기 했고, 교육과정과 자치, 교사의 능동적 자세, 시스템의 구축 등을 강조하였다.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바람이 있다. 학교 인권의 정착을 위해 우리의 시선과 고민을 더 작고 소소한 것에 맞추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상에 말처럼 쉬운 것이 없다. 백번 말로 떠드는 것은 쉬우나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는 일은 어려운 법이다. 그리고 세세한 영역으로 들어가면 겉으로 보는 것과 다른 복잡한 문제가 자리하고 있게 마련이다. 민주주의라는 말도 학교 현장에 들어가면 교육과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등 실천영역에서는 좀 더 치밀하고 치열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듯이, 학생인권도 마찬가지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몇 년 전 상황에서는 정당성을 강조하는 좋은 말들이 수없이 우리들의 가슴을 울렸고 우리를 돌아보게 했다. 물론 지금도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 가슴을 울렸던 말들이 현장에 뿌리 내려 우리들 생활에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좀 더 섬세한 작업이 요구된다.

교육은 작고 세밀한 부분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의 인권 보장도 아침부터 학교생활을 마치는 시간까지 작고 소소한 것에 집중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떻게 학교마다 학교에 맞는 작고 인권친화적인 그림을 그려나가느냐가 우리의 또 다른 과제가 될 것이다. 결국 교육도 인권도 감수성의 문제이다. 소소한 것은 소소하기 때문에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새겼으면 좋겠다.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본 학생인권의 현황 <2012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이보영(안성 두원공업고등학교 2학년)

긍정적인 평가 뒤에 미성숙한 학교 현황

학생인권조례 시행 2년차를 맞아 시행한 '2012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결과 보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까지는 미성숙한 학교의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2011년과 비교했을 때 2012년 실태조사 결과 인권증진 응답이 증가하였고, 그것은 학생인권 조례가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목적인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것과는 다르게 그 내면은 아직까지는 안착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에 시간이 걸릴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 친화적 학교 구축에 이어 교사의 경우에는 시행 초기를 지나면서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인권교육의 주체로서의 자리매김이 부족해진 상태입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 함께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학생의 경우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일부적인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을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에 지도하에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과에 이해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해관계를 보다 잘 성립되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러한 상황이 성립되지 못하여 발생된 문제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발단속 관련문제의 경우 일선 학교의 기준이 모호하여 학생과 교사간의 잠재적 갈등이 우연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육체적 체벌의 경우는 현격한 감소를 보였지만 비육체적 폭력인 언어폭력이나 따돌림의 해소는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주요 참여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참여와 인식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인권교육 운영에 있어 현재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생참여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각 학교별 인권교육방식이 다르며 일부 학교에 경우에는 학생인권교육이 아예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외부 강의로만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교육의 주체로서의 교사의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 인권교육에는 인권 부문에 대한 일부 교사의 부정적 인식이 상존하고 학교 폭력에 대한 근원적 접근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들의 이해와 참여 촉진이 필요하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형식적 인권 교육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실제적 인권교육으로서 그곳에서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의 목적과 내용에 관하여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청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3주체가 대상화가 된 상태에서 말입니다.

우리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청소년들은 더디지만 천천히 사회의 의미를 알아가고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화, 인권, 소통이 함께 어우러져 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기 학교에서 배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미래는 더욱 밝습니다.



학생인권보장기구의 현황과 전망 <인권옹호관 제도>

이보영(안성 두원공업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옹호관 알리기!

학생들에게 강한 대변인이 필요합니다. 우리사회에 아동청소년의 복지는 거의 배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옴부즈맨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동옴부즈맨은 정부나 정치에 의해 관습 받지 않으며 독립적이다. 그리고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어준다는 것이다. 내가 학생참여위원회에 부위원장 연설에서 내세웠던 공약이 바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는 부위원장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교육과 지식에 대해 말씀해주는 사람들은 많지만 우리에게 생각들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분들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생겨나게 된 것이 옹호관제도 인 것입니다.

옹호관은 학생인권의 범주를 최대한 넓게 상정하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청소년들의 인권을 상담해주며 교사에 대한 상담까지 해주며 더불어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교육 지원을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의식 향상을 통한 학교 내 인권침해의 사전예방 인권의식 함양을 지원해줍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청소년들에게 너무도 필요하고 감사한 분들 이시지만 정작 학생들은 '학생인권옹호관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학생참여위원회활동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옹호관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고, 다른 의원들에 경우에도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학교 동급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279명의 학생 중 저를 제외한 학생들 중 4명의 학생만의 옹호관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저희 학교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들의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학생들은 그 존재에 대해서도 미비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 폭력이나 부당징계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은 늘어만 가고 이를 알아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조언자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옹호관은 학생들과 함께 할 준비를 마친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옹호관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 답답합니다.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옹호관제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옹호관제도에 대해 대한 각 학교별 강의시수 제정하기, 옹호관제도에 대한 글짓기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옹호관제도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함께 하고, 학생인권옹호관께서 청소년들의 곁에 계신다는 것에 힘이 납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옹호관의 역할과 한계

김민태(경기도교육청 2권역 학생인권옹호관)



서론

-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심판자인가?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이하 '인권조례') 제39조는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이하 '옹호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제41조 이하에서 옹호관의 직무내용을 학생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상담과 조사 및 구제로 규정하고 있다.
- 이로 인해 학교 관리자와 교사의 입장에서는 간혹 옹호관을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불편부당한 조정자라기보다는 학교경찰 또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심판자로서 인식하는 등 '학생' 보호 위주의 편향된 역할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학생이나 학부모의 경우, 옹호관에게 모든 문제를 학생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하여 주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 그러나 교육기관 내 옴부즈퍼슨인 옹호관은 학교 내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최종적 심판관이나 학생의 인권만을 보호하기 위한 일방적 존재로 파악하기 보다는 학교공동체 모두의 인권증진을 위한 조화로운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조정관으로서 인식하고, 그에 부합하는 역할 모델을 학교 구성원과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따라서 2011년 5월 이후 2년 5개월 여 간의 옹호관 활동을 토대로 인권조례의 안착과 교육공동체의 인권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옹호관의 합리적 역할 모델은 무엇인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옹호관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여야 하는지를 간략히 논의해 보고자 한다.



경기도학생인권옹호관의 한계와 역할 강화 방안

- 학생인권옹호관의 독립적 활동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 인권조례는 교육감 소속 하에 옹호관을 설치하도록 규정(조례 제39조1)하면서, 그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기구와 직무보좌를 위한 인원을 배치(조례 제42조2)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의 옹호관 임명과 권역별 근무명령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규정한 수준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한 사무기구는 불완전한 상태인 것이 사실이다. 또한 오동석 교수님의 발제 내용과 같이 조례의 위임에 부합하도록 향후 교육청 직제규칙에 옹호관과 그 사무기구가 명시하고 전문조사원을 두는 등 옹호관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규상의 지원과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단순한 조사관의 역할을 넘는 옹호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강화

○ 인권조례 제39조 제1항이나 제41조 제1항을 보면 옹호관을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조사-시정권고'라는 개별사안 해결 중심의 조사관으로 단순히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은 학생인권 침해의 사후 구제를 주된 직무로 하게 되어, 학생인권 침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책개선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다.

○ 그러나 학교 내 학생인권의 보장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사안구제의 역할보다 인권교육과 정책개선 업무에 보다 집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옹호관들은 인권교육과 인권정책 업무에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5명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학생인권옹호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2) 제42조(사무기구 등) ①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다.
 ③ 사무기구에 배치된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무기구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과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경기도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 방향

01 학교 인권경찰 Vs. 신속하되 값싼 해결을 지원하는 조정자

○ 옹호관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실제적 진실을 밝혀내고, 그 사실에 기반하여 가해자를 응징하기 위한 인권경찰의 역할보다는 인권 옴부즈퍼슨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값싸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이러한 인식 아래 경기도교육청 옹호관들은 학교 내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최종적 심판자의 역할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 이해 아래 치유와 통합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우선시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가피해자 스스로 인권적 대안을 찾아 가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

02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인권증진을 위한 옹호관의 역할모델 검토

가.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역할 모델

- 조례의 규정을 형식적으로 파악한다면 옹호관은 학생인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구제하는 직무만을 수행하는 자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의 보호와 증진은 단순히 사후적인 조사와 구제 절차로 온전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사전예방적 활동과 학교공동체 구성원 전원의 인권증진을 통한 거시적 접근 통해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옹호관은 단순히 학생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 직무 위주의 역할보다는 학교공동체 구성원 전부에 대한 인권감수성과 전문성 제고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활동 방안>

- 가. 학생 인권교육 지원
- 나. 교사 인권연수 지원
- 다. 교사의 인권친화적 학생지도를 위한 기본적 인프라 구축 지원
 - * 학생인권향상을 위한 간접적 제도 개선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음
- 라. 교사의 교권 강화 지원을 통해 1차적 인권옹호관 역할 지원
 - * 학부모, 학생의 인권침해 관련 부당민원에 대한 합리적 해결 지원

나. 교육공동체 미래지향적 통합 지원 역할 모델

-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사후적 구제활동에 있어서도 무조건적으로 실제적 진실의 추구에 몰입하거나 엄격한 법률주의적 시정조치 위주로 해결하기 보다는 인권침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소통과 화해



과정을 제공하여 당사자 간에 미래지향적 해결 방안을 스스로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즉, 학생의 입장에서 최대 12년간 지속되는 교육공동체 내의 생활을 고려한다면 옹호관 등 타인의 개입에 의한 피동적, 일방향적, 과거지향적 해결보다는 인권침해 사안의 당사자들이 능동적, 쌍방향적, 미래지향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돕는 것이 향후에 동일한 인권침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인권적으로 형성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며, 교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를 재차 범하지 않고, 인권친화적 교육지도 방안을 익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주요 활동 방안>

- 가. 학생, 학부모에 대한 미래지향적 소통 도모
- 나. 학생지도 과정 중 교사의 절차 위반, 인권 침해 인식 재고 기회 제공
 - * 인권조례와 다른 법령의 절차 규정 설명 및 적용 지원
- 다. 인권침해 당사자 간의 소통을 통한 미래지향적 합의와 화해 지원
 - * 구제절차 기간 소모되는 불필요한 심리적 손실 최소화

다. 악의적, 반복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엄격주의 모델

- 학생인권 침해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적 활동과 미래지향적 통합을 위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에 대한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인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인권조례에 의한 옹호관의 직무권한을 엄격하게 행사하여 향후 인권침해 재발을 강력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권조례 시행 3주년 이후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최근 옹호관들은 엄격주의 모델에 기반한 시정권고징계권고 등을 강화해 가고 있다.

라. 인권조례에 근거한 교육행정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모델

- 모든 영역에서 인권은 주류화되고 있으며, 경기교육 역시 인권조례의 제정과 함께 교육내용은 물론 교육환경 조성까지 반드시 '인권'의 최대 보장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옹호관들은 2012년 2월 발표된 '경기도 학생인권실천 3개년 계획'의 수립을 적극 지원하고, 이후 이행 점검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IV 옹호관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

01 옹호관제도의 한계

- 학교 구성원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교사의 경우 학생지도나 인권교육에 인권조례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의 경우 체벌금지나 두발자유 등 기본적 사항 외에 참여와 자치를 중시하는 조례 제정의 기본취지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옹호관 제도의 이해 부족으로 학교 측은 인권침해 사안의 사전예방이나 사후구제 절차에서 옹호관제도의 활용이 미흡한 상황이기도 하다.
- 학생·학부모의 경우 인권옹호관의 권역별 운영과 인원 부족에 따른 접근성의 한계와 이해 부족으로 옹호관을 통한 인권침해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있기도 하다.

02 개선방향

- 교사와 학생별 인권욕구를 분석하고, 이들의 인권욕구에 부합하도록 인권조례와 옹호관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가. 학생 입장에서는 학생권리의 이해와 보장체계, 권리의 한계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지원 필요
- 나. 교사 입장에서는 1차적 학생인권옹호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이해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인권옹호관제도의 이용접근성 강화와 신속한 문제 해결 능력 확보를 위해 인권조례에 부합하도록 향후 점진적으로 관련 사무기구를 개편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학생인권 정책업무기능(실태조사, 실천계획수립과 이행점검, 인권교육계획 수립 및 수행, 기타 인권정책 검토 등)과 학생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구제 업무기능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로의 개편 검토 필요

참고 옹호관 직무수행의 결과를 토대로 한 학생인권 현황 분석

01 인권상담 통계 및 유형별 분석

가. 권리영역별 상담사례 유형 분석(2011.9.1. ~ 2013.7.31.)

권리 영역 구분	인권조례 관련조항	상담(건)	영역별 비율(%)
차별	제5조	138	4.8
체벌	제6조 제2항	400	45.4
언어적 폭력	제6조 제3항	367	
학교폭력(금품갈취, 폭행 등)		360	
따돌림		120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69	
학습에 관한 권리	제8조	87	5.8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제9조	82	
개성실현(복장, 두발 등)	제11조	104	10.2
사생활의 비밀/자유(휴대폰 등)	제12조, 제13조	192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	제15조, 제16조	35	1.2
자치활동, 참여권	제17조 내지 제19조	19	0.7
부당징계	제25조	618	21.3
기타		310	10.6
합계		2,901	100

※ 위 인권상담의 권리영역별 분석자료는 내담자 상담의 침해유형을 중복 분석한 자료임

- 2011년 9월 학생인권옹호관의 본격적인 직무수행 개시 이후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보면 '체벌 및 폭력 등(45.4%) > 부당징계(21.3%) > 두발, 휴대전화 등 프라이버시권 침해(10.2%) >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강제 등 학습권 침해(5.8%) > 차별(4.8%)' 등의 순으로 학생인권침해 상담이 접수되었음을 확인
- 인권조례 시행 4년차에 접어들고 있으나, 위와 같은 상담내용의 권리 영역별 비율은 2011년 9월 이후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이나, 2012년 8월 이후 차별행위에 관한 상담과 학생의 참여와 자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상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 내 인권적 관심이 여전히 체벌과 폭력 문제와 두발제한 등 인격권이나 개성실현권 등의 침해문제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한편으로 학교 내 차별문제나 학생참여 및 자치 등 표현의 자유의 문제에 대해 의미있는 인식이 시작되고 있으며, 이는 학교 내 인권문제의 다양화라는 의식의 성장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하지만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2011년 12월 이후 학교폭력 및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한 상담과 조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바, 부당징계에 대한 상담 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볼 때 학교 내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사 연수 등의 조치가 지속되어야 할 것임

나. 가해자학교급설립형태별 상세 분석(2012.2.1. ~ 2013.7.31.)

상담 유형 구분	가해자			학교급				설립형태		
	교사	학생	기타	초	중	고	기타	공	사	기타
차별	112	4	8	22	37	60	5	80	22	22
체벌(신체폭력, 간접 폭력)	286	0	12	50	86	150	12	193	61	44
언어 폭력(욕설과 폭언 등)	288	16	13	59	86	169	3	207	59	51
학교폭력(금품갈취, 폭행 등)	46	225	60	99	132	76	24	231	39	61
따돌림	12	63	4	35	23	20	1	56	8	15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23	13	15	12	16	18	5	35	12	4
학습에 관한 권리 (수업배제행사참여 강요)	58	5	15	12	20	41	5	51	16	11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46	0	3	3	1	45	0	28	19	2
휴식권 박탈 (쉬는시간, 점심시간 제한)	2	0	1	0	0	2	1	1	1	1
개성실현(복장, 두발 등)	74	2	6	7	19	55	1	57	19	6
사생활의 비밀/자유(휴대폰 등)	130	7	31	25	41	90	12	108	29	31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	30	1	2	4	15	14	0	17	9	7
자치활동, 참여권	12	0	4	2	8	5	1	12	1	3
부당징계 (학교폭력 처리절차 문의 포함)	306	28	239	89	228	223	33	433	53	87
기타	82	20	135	59	73	78	27	156	27	54
합 계	1,507	384	548	478	785	1,046	130	1,665	375	399
비율(%)	61.9	15.7	22.4	19.58	32.2	42.7	5.3	68.3	15.3	16.4

※ 위 통계는 인권상담의 침해유형을 중복 분석한 자료임(2012년 2월부터의 통계자료 분석)

- 학생인권 침해의 가해자 유형을 보면, '교사에 의한 인권 침해(61.9%), 학생 간 인권침해(15.7%), 기타 비학생이나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22.4%)' 등의 순서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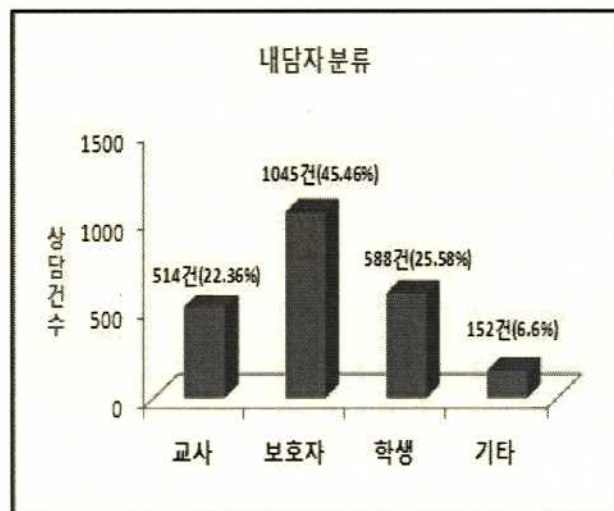


- 이렇게 교사의 인권침해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학생인권옹호관제도의 본래 성격적 측면과 내담자가 학생 및 학부모라는 측면, 그리고 학교 내에서 여전히 학생과 교사 간 권위적 관계설정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내담자의 학교급별 비율을 보면, '고등학생(42.7%) > 중학생(32.2%), 초등학생(19.6%), 기타 유치원생이나 비학생(5.3%)'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종전 통계와 비교해 볼 때 고등학생 관련 인권침해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됨
 - ※ 2012.2.01.-2013.1.31.까지의 통계에서는 '중학생(37.8%), 고등학생(37.5%), 초등학생(20.5%), 기타 유치원생이나 비학생(4.2%)'의 순서로 나타난 바 있음
- 학교의 설립형태로 보면, 국공립학교(68.3%), 사립학교(15.3%), 기타 불분명한 상담(16.46%)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지난 통계보다 사립학교의 비율이 1%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 2012.2.01.-2013.1.31.까지의 통계에서는 국공립학교(68.30%), 사립학교(14.4%), 기타 불분명한 상담(11.6%) 등의 순서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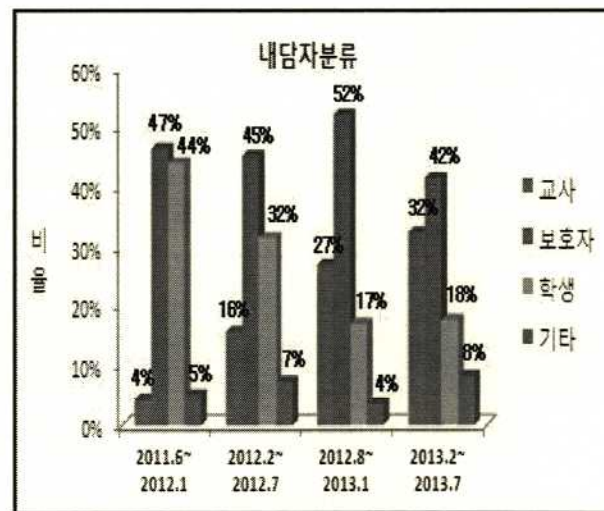
다. 내담자 유형별 상담 분석 및 변화 추이 분석(2011.6.1. ~ 2013.7.31.)

구분	내담자				합계
	교사	보호자	학생	기타	
2011. 6. ~ 2012. 1.	16	174	165	19	374
2012. 2. ~ 2012. 7.	96	277	193	45	611
2012. 8. ~ 2013. 1.	120	232	76	16	444
2013. 2. ~ 2013. 7.	282	362	154	72	870
합계	514	1045	588	152	2,299
비율(%)	22.36	45.45	25.58	6.61	100

※ 상기 내담자 유형별 상담분석 통계자료는 전체상담 건수 중 유의미한 상담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한 자료임(각종 안내 상담 건수 제외 자료)



<전체 상담 중 내담자 유형별 비율>



<내담자 유형별 상담건수 변화 추이>

- 학생인권옹호관을 통해 인권상담을 진행한 내담자의 유형은 학생의 보호자(45.4%) > 학생(25.6%) > 학교 관리자 및 교사(22.4%) > 기타 또는 관계 불명 등(6.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종전에 비해 교사의 내담비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임
 - ※ 종전까지의 통계에서는 학생의 보호자(47.8%) > 학생(30.4%) > 학교 관리자 및 교사(16.2%) > 기타 또는 관계 불명 등(5%)의 순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교사들의 내담 증가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생인권옹호관제도의 홍보를 통해 학생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의 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교사들에 의한 내담 증가 현상은 학생인권옹호관제도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리 매김 해 나가고 있음은 물론, 사후구제 중심의 상담에서 사전예방 차원의 상담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02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조치 통계 분석

[2011. 9. 1. ~2013.7.31.]

구분	조사 (건)	구제 (건)	구제조치 내용				
			인권침해/차별행위 중지	재발방지 대책마련	원상회복/손해배상	인권교육 수강/징계 요구	합의조정 등 현장해결
차별	38	33	21	17	0	2	20
체벌	169	164	79	134	5	50	90
언어적 폭력	89	88	30	35	3	28	48
학교폭력(폭행, 갈취 등)	54	46	23	20	0	7	35
따돌림	13	11	8	9	0	0	10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12	11	5	8	0	7	7
학습에 관한 권리	25	27	13	14	1	3	15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35	28	22	18	0	0	15
개성실현복장, 두발 등	42	37	26	22	1	3	14
사생활의 비밀/자유	64	58	31	40	0	5	29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	10	8	4	5	1	0	5
자치활동, 참여권	5	5	2	3	0	0	4
부당징계	94	53	29	38	1	8	41
기타	48	41	6	17	0	0	30
합 계	698	610	299	380	12	113	363
구제조치 유형별 비율(%)			25.6	32.6	1.0	9.7	31.1

※ 조사대상 인권침해의 유형별 분석은 조사대상 쟁점별 내용을 중복 분석한 자료임



- 학생인권 침해로 인정되는 사안에 대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시정조치 내용의 비율을 보면, '재발방지 대책마련 권고(32.6%) > 합의조정 등 현장해결(31.1%)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중지(25.6%) > 인권 교육 수강 및 징계 권고(9.7%) > 기타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권고(1%)'의 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종전 통계와 달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나 징계 권고가 증가한 것에 기인하는바, 학생 인권옹호관들이 학생인권침해 사건의 가해 교사나 학교장 등에 대해 인권친화적 학생지도를 제시하는 컨설팅 형태의 조사와 해결을 여전히 우선하고 있으면서도, 인권조례 시행 4년 차에 접어들면서 반복적, 악의적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징계적 조치를 강하게 권고하고 있기 때문임
 - ※ 종전까지의 통계를 보면 '합의조정 등 현장해결(32%) > 재발방지 대책마련 권고(31%)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중지 (30%) > 인권교육 수강 및 징계 권고(6%) > 기타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권고(1%)'의 순으로 나타났었음
- 학생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인권옹호관의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 해당 학교의 적극적 협조로 100% 이행 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학교 관리자와 교사들이 교육과 관련 행정에 인권적 가치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체적 동의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음

03 인권의식 함양과 인권침해 사전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지원활동 현황

(2011.9.1. ~ 2013.1.31.)

구분	연수대상			합계
	교사 연수	학생 연수	기타	
합계	162	65	49	276
비율(%)	58.7	23.5	17.8	100

-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총 276회의 인권교육을 지원하여 인권조례 제정의 본래 의미의 이해를 도모하고, 학생지도에 인권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또한, 학교 내 소수자인 장애학생이나 학생운동선수 등의 인권 보호 방안과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노동 인권 보호 방안에 대한 교육을 특별사업으로 진행
-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인권의식을 증진하여, 인권침해 사안 발생 후의 사후적 구제조치 보다는 사전예방 활동 중심으로 인권보장 효과를 제고

Memo

Lined memo page with 18 horizontal lines.

Memo

Lined memo page with 18 horizontal lines.